임실군의회 공고 2014 - 35호

제243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임실군 클린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게재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예고합니다.

2014. 11. 12.

임실군의회의장

1. 제정이유

민선6기 군수공약 사항으로 위법.부당한 사항 제보,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통한 부정과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실추된 신뢰를 확보하여 클린임실을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기능을 정함 (안 제2조)
나. 위원회의 구성 방법과 임기를 정함 (안 제3조~제4조)
다. 위원회의 위·해촉, 운영사항을 정함 (안 제5조~제6조)
라. 회의 개최, 포상금 등을 정함 (안 제7조~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시행령 제80조
나. 예산조치 : 추경 1백만원 확보예정
다. 협 의 : 예산담당 협의
라. 기 타 :
(1) 입법예고 (2014.7.28~2014.8.18) 결과 :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3) 비용추계서 : 붙임
(4) 성별영향분석평가 : 붙임
(5) 관련법령 발췌문 : 붙임

임실군 조례 제 호

임실군 클린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행정참여 활성화로 위법·부당사항 시정과 군민들로부터 행정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한 주민행정 감시제도인 임실군 클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한다.

1, 위법.부당한 행정처리 및 부조리 등 제보된 사항중 감사요구에 관한사항

2. 주민고충사항 개선요구 건의에 관한 사항

3.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군수가,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구성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간사장 1인, 간사 1인을 두되 간사장은 기획감사실장이 간사는 감사법무담당이 된다.

제4조(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위원의 보궐 시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촉 및 해촉) ①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이 60%를 넘지 않아야 한다.

1.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

2. 군 행정 및 주민여론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관찰하고 수렴하여 제보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

3. 지방행정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관 및 단체에 재직하였던 자

4. 변호사 및 사법기관에서 10년 이상 해당분야 실무 경험이 있는 자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회 위원으로써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발생 및 질병 등의 사유로 역할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운영상황의 보고) ① 기획감사실장은 위원회의 운영상황을 분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상황의 보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원회 제보사항의 접수·처리상황

2. 조사·처리결과 비위관련 공무원 조치상황

3. 그밖의 위원회의 활동상황 및 주민여론 동향 등

제7조(회의 개최 등) ① 위원회 회의는 매분기별로 개최하고 위원회의 활동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포상금 지급) ① 군수는 위법▪부당한 사항을 제보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개인정보의 보호) ① 제보한 사항을 처리하는 사람은 제보 자가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보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가 대외적으로 노출 또는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보사항에 대하여 접수·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여 제보 사항이 유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0조(성실의무 이행) 위원회 업무처리와 관련된 공무원은 업무 수행에 있어 태만하지 않고, 항상 성실한 자세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임실군 클린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해당사항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작성대상 아님

4.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김택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4A전북임실036			
정 책 명	**임실군 클린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전라북도 임실군		
	부서명	기획감사실		
	담당자명	박성자	전화번호	063-640-2055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4년 08월 29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기획감사실)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원안동의 ■ 개선의견 ▪ 클린위원회의 활동은 여성 및 남성들의 임실군정에 대한 불편과 위법, 부당사항 등을 제안.시정할 수 있는 장치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위원회 구성 시 여성의 40이상 참여가 보장되어야 할 것임. 여성들의 경우 행정이나 기타 생활상의 불편을 남성들과 다른 조건과 경험으로 민감하게 느끼고 제기하고 잇는 상황임. 아울러 공적 활동에 대한 익숙하지 못한 경험은 행정처리 절차 등의 불편함을 느끼는 정도가 다를 것으로 보여 여성들의 군정에 대한 경험들을 적극 반영할 수 잇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따라서 위원회 구성에서 특정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삽입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위원회 참여 자격요건에서 여성들의 참여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하거나 영역을 넓힐 필요가 있음. 즉 시민단체나 여성단체 활동경험이 있거나 활동하고 있는자를 위촉하거나 복지분야 등의 전문가, 활동가 등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법조계 관련 참여조건에서 10년이상의 경우 여성들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맞는 규정이 될 수 있음. 특히 임실군 같은 경우 여성들이 10년이상 법조 업무를 하는 인력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4번 법조 관련 경력 조건에서 자격을 5년 또는 3년으로 낮추어 여성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검토의견 반영 결과 (기획감사실)	위원회 구성에 있어 성별을 고려한 성인지적 서비스 행정이 될 수 있도록 6조(위촉 및 해촉)제1항에 “다만, 특정 성이 60%를 넘지 않아야 한다“라는 문구 추가하겠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4년 09월 04일

주민생활복지과

(담당자/연락번호 : 정나겸/063-640-2124)

기획감사실장 귀하

참고 **관련(상위) 법 발췌문**

□ 지방지치법시행령 제80조

제80조 (자문기관의 설치요건)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이하 "자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